

2016 학점은행제 길라잡이



I. 학점은행제 소개 6

II. 학습자등록신청 14

1. 학습자등록신청이란? 14
2. 신청기간 및 방법 14
3. 학위과정 및 전공선택 17

III. 학점인정신청 22

1. 학점인정신청이란? 22
2. 신청기간 및 방법 22
3. 기타 신청 25
4. 학점원 소개 및 학점인정기준 27
5. 학점인정이 제한되는 경우 36

IV. 학위신청 42

1. 학위신청이란? 42
2. 신청 기간 및 방법 43
3. 학점은행제 학위수여요건 44

V. 제도 활용 48

1. 시험 응시자격 부여 48
2. 자격(면허) 취득 49

VI. 학습 지원 52

1. 증명서 발급 52
2. 상담 서비스 54
3. 학습도움자료 56

VII. 부록 60

1. 학점인정관련 주요 변경 내용 60
2. 웹진으로 보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61
3. 시·도 교육청 방문접수처 62

표 목차

〈표 1〉 학점은행제 운영에 관한 각종 법·규정	8
〈표 2〉 학점은행제·대학교 비교	11
〈표 3〉 일반적인 학습자등록 신청기간	14
〈표 4〉 학습자등록 신청 방법 및 접수처	15
〈표 5〉 학습자등록신청 시 제출 서류	16
〈표 6〉 학사 학위 개설 전공	18
〈표 7〉 전문학사 학위 개설 전공	19
〈표 8〉 일반적인 학점인정신청기간	22
〈표 9〉 학점인정신청 방법 및 접수처	23
〈표 10〉 신청 학점원별 제출서류	24
〈표 11〉 기타 신청 종류 및 내용	25
〈표 12〉 기타 신청 종류별 신청방법	26
〈표 13〉 학점원별 학점인정 기준 요약표	28
〈표 14〉 1개 대학에서 시간제등록으로 이수할 수 있는 최대 학점	32
〈표 15〉 학위종류별 인정 가능한 자격 수	33
〈표 16〉 독학학위제 이수 단계별 인정 학점	34
〈표 17〉 중요무형문화재 이수등급별 인정학점 및 증빙서류	35
〈표 18〉 학위수여예정자의 최종 학기 구분	37
〈표 19〉 1개의 교육훈련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학점	37
〈표 20〉 중복과목 판단의 기준 및 예시	38
〈표 21〉 일반적인 학위신청 기간 및 방법	43
〈표 22〉 학점은행제 학위수여요건	44
〈표 23〉 기술계학원에 대한 교양학점 탄력운영제	44
〈표 24〉 타전공 학위수여요건	45
〈표 25〉 학점은행제로 응시 가능한 시험	48
〈표 26〉 학점은행제로 취득 가능한 자격	49
〈표 27〉 학점은행제 증명서 종류	52
〈표 28〉 학점은행제 증명서 발급 방법	53
〈표 29〉 전화상담 범위	54
〈표 30〉 온라인 일반상담 구분	55
〈표 31〉 학점인정관련 주요 변경 내용	60
〈표 32〉 광역시 이상 시·도 교육청 방문접수처	62

그림 목차

[그림 1] 대한민국 학제 7

[그림 2] 학점은행제 신청 흐름도 9

[그림 3] 학점은행제 학위취득 흐름도 10

[그림 4] 최종학력별 선택 가능한 학위과정 17

[그림 5]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검색 화면 30

[그림 6] 1년/1학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에 포함되는 학점원 36

[그림 7] 학기의 구분 36

[그림 8] 학점은행제 학위수여 절차 42

[그림 9] 콜센터상담 도식도 54

[그림 10] 학점은행제 첫걸음 동영상 화면 56

[그림 11]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6년 7월호 NILE 뉴스레터 61



Ⅰ 학점은행제 소개

I 학점은행제 소개



1. 제도 취지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3248호)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2. 학점은행제 이용대상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는 누구나 학점은행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점은행제 이용 사례〉

- 대학을 중퇴하였으나, 전문학사 혹은 학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 전문학사 학위를 소지하였으나, 진학·취업 등의 목적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 이미 학위를 소지하고 있으나, 새로운 전공분야의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 각종 자격취득을 위한 요건을 갖추고자 하는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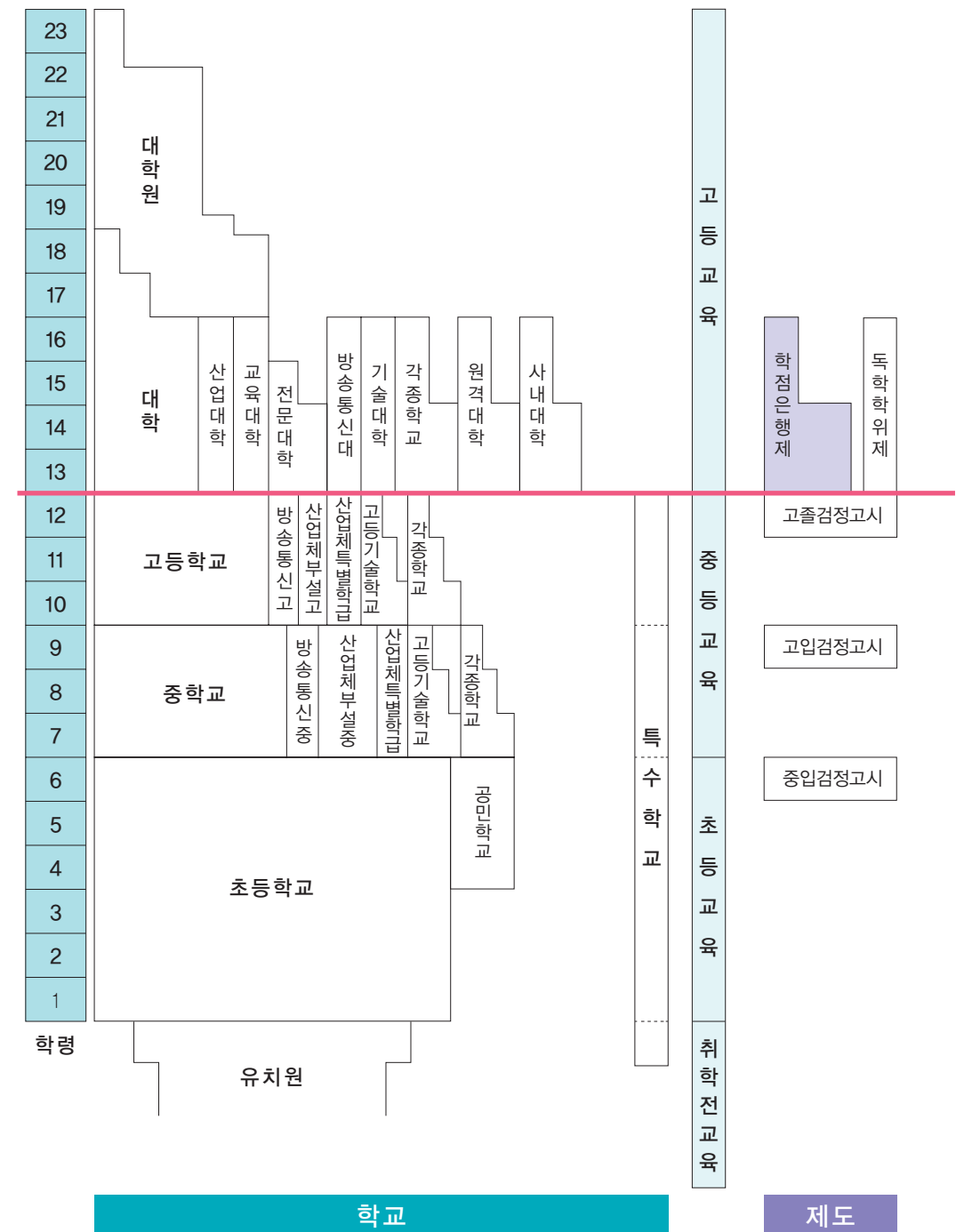
3. 학력인정

학점은행제 학위 취득 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거 대학 혹은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습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제7조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이나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그림 1] 대한민국 학제



※ 학점은행제 전문학사 학위취득 시에는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 학사 학위취득 시에는 4년제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4. 학점은행제 관련 법·규정

〈표 1〉 학점은행제 운영에 관한 각종 법·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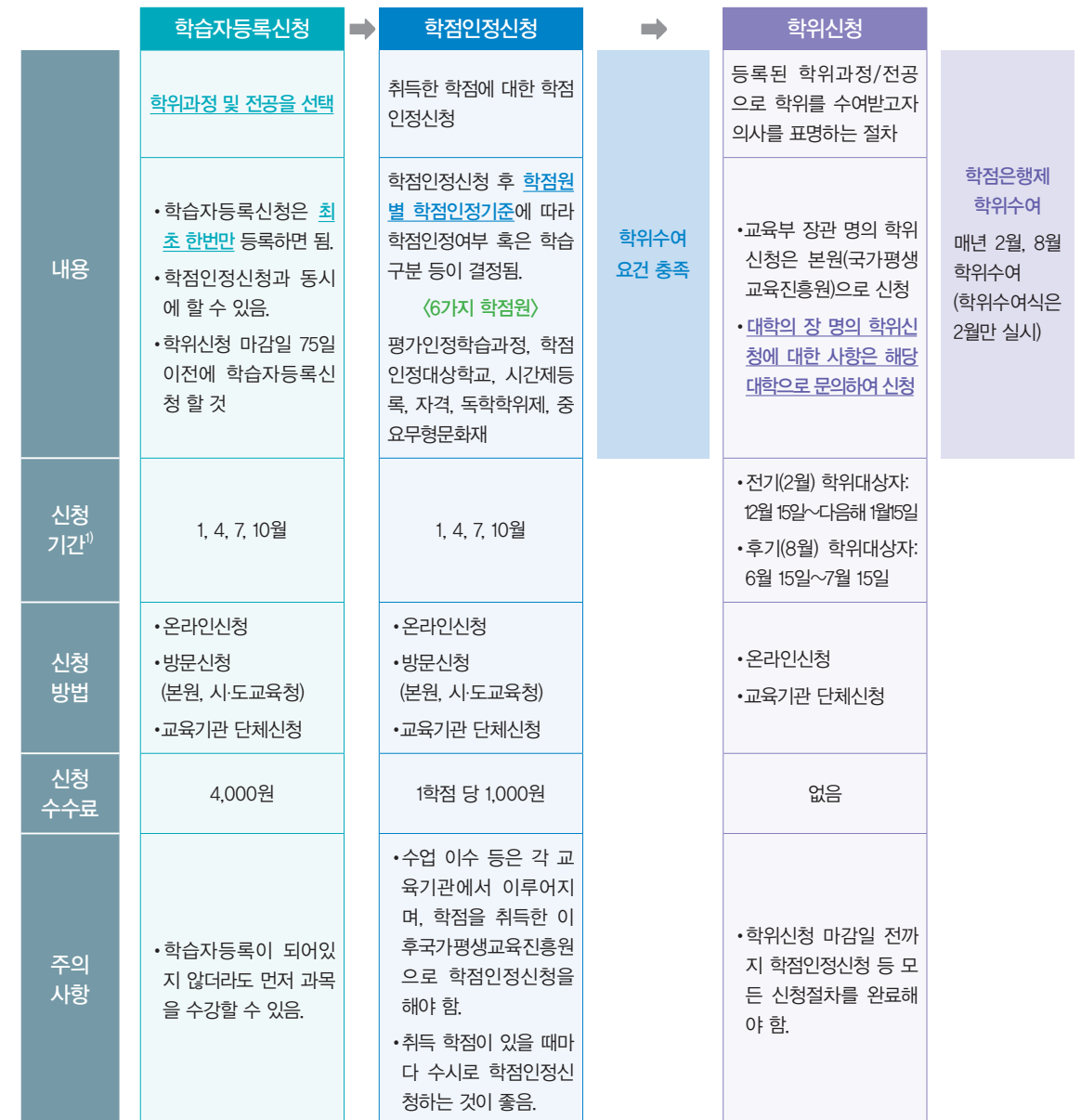
구 분	발령자	비 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국회	2015.3.27 개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	2016.3.25 개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육부장관	2015.12.31 개정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	2015.10.20 제정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	교육부장관	2016.1.6 제정
학점인정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	교육부장관	2016.1.6 제정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2012.2.29 개정
제21차 표준교육과정	교육부장관	2016.5.12 고시
제19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 수정 고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2016.5.11 고시
2016년 학점은행제 신청·접수계획 공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2015.12.1 공고
학점은행제 중복과목 및 대체과목 처리기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2013.3.27 고시
학위취득일 이전에 이수한 학습과목에 대한 학점인정기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2012.8.29 공고

(2016. 7월 기준)

5.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에서 학위취득까지

학점은행제에서는 학습자등록신청, 학점인정신청, 학위신청을 완료하고, 학위수여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학위를 수여하고 있습니다.

[그림 2] 학점은행제 신청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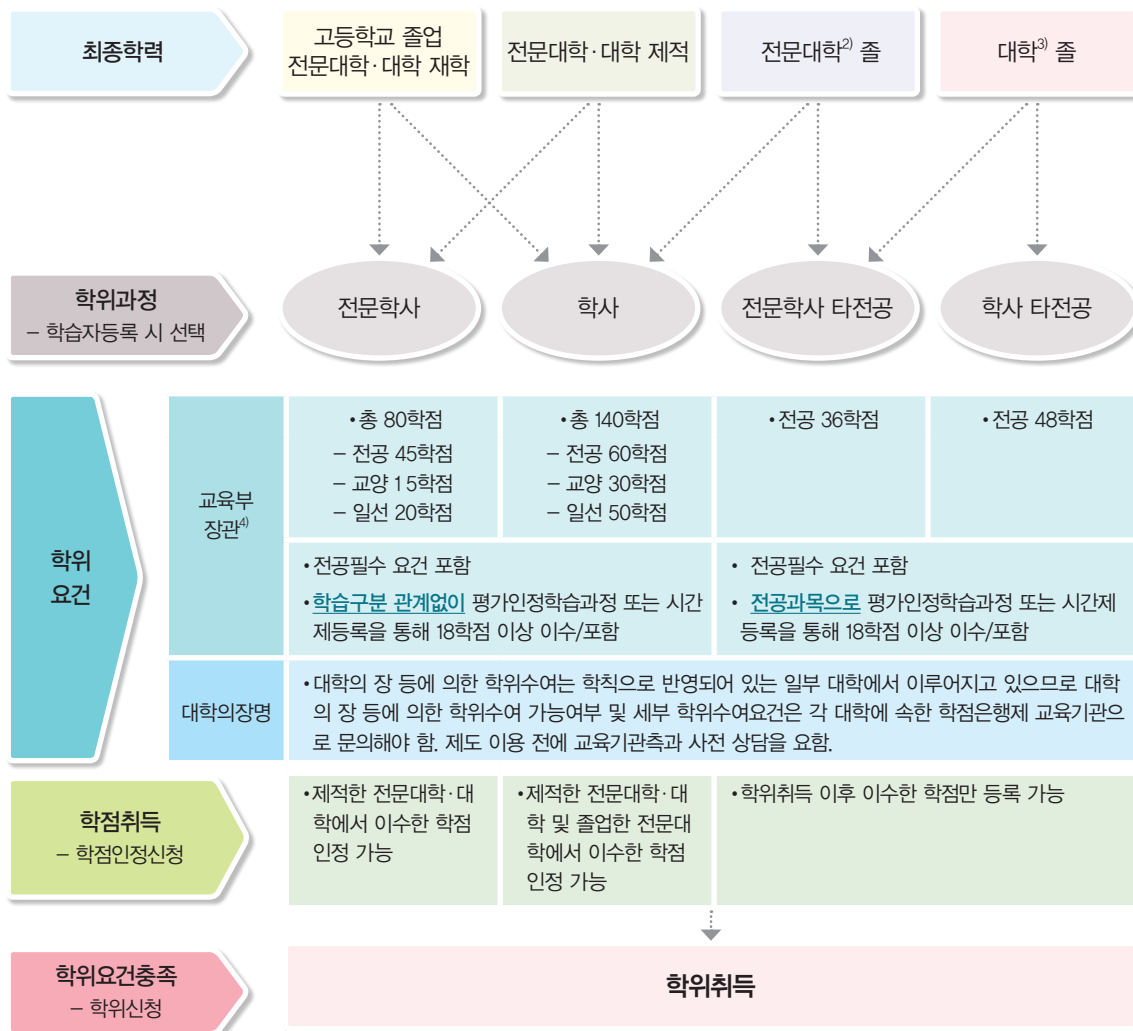


1) 자세한 **신청기간 및 학점원별 신청방법**은 접수계획에 따라 다르므로, 매분기 공지되는 공지사항을 참고해야 함. 대학장 명의 학위신청은 사전접수를 받으므로 반드시 교육기관(대학)을 통해 확인해야 함.

6. 최종학력에 따른 학위과정 선택방법

학점은행제는 최종학력에 따라 등록할 수 있는 학위과정이 다릅니다. 아래 도식표는 일반적인 사례를 나타낸 표이므로 제도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림 3] 학점은행제 학위취득 흐름도



7. 학점은행제와 대학교의 차이

〈표 2〉 학점은행제·대학교 비교

구 분	학점은행제	대 학 교
같은 점	• 학위취득 시 법적으로 동일한 학력을 인정받음. • 각종 자격 취득, 취업, 진학 가능함. • 전공을 선택해야 함. • 2월, 8월 학위를 수여함.	
다른 점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운영 • 진입 장벽이 낮음. • 스스로 표준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필요한 과목 이수 • 다양한 학점취득방법이 있음. • 전문학사, 학사, 전문학사 타전공, 학사 타전공 과정이 있음. • 필요한 등록(신청)절차를 이행해야 함. – 학습자등록, 학점인정신청, 학위신청 • 등록에 따른 수수료 발생 – 학습자등록(4,000원), 학점인정신청(1학점 당 1,000원)	• 대학교 학칙에 따라 운영 • 수능 등 입학전형을 통해 입학 • 정원이 정해져 있음. •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에 따라 수업 이수 • 학칙에 따라 학점교류 가능 • 입학한 학교의 학제에 따라 하나의 학위과정 진행 • 부(복수)전공 과정이 있음. • 입학금, 등록금 납부 • 캠퍼스가 있음. • 입학, 졸업 개념이 있으며, 졸업연한이 정해져 있음.

※ 위 내용은 학점은행제와 대학교의 차이를 보다 쉽게 설명하기 위해 일반적인 사항들을 나열한 것입니다. 법적으로 학력은 동등하게 인정되나 호봉산정, 자격발급, 비자신청 등은 해당 기준에 따라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가 전문대학·대학 졸업자와 다른 대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고등교육법 제50조에 따른 전문학사학위 취득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포함)

3) 고등교육법 제35조에 따른 학사학위 취득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포함)

4) 전문학사 3년제 과정인 이료 전공은 전공 54학점 이상(전필 포함), 교양 21학점 이상, 총 120학점 이상 취득해야 함. 전문학사 타전공 과정으로 진행할 경우 전필을 포함하여 전공 42학점 이상 취득해야 함.

National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



› 학습자등록신청

1. 학습자등록신청이란?
2. 신청기간 및 방법
3. 학위과정 및 전공선택

II 학습자등록신청



1. 학습자등록 신청이란?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인적사항, 희망학위과정/전공 등 필요한 정보를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 학습자등록 신청 시 주의사항

1. 학습자등록신청은 **최초 한번만** 하면 되고, 학점인정신청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학습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평가인정학습과정이나 시간제등록 등을 통해 과목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3.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8조제6항에 따라 전기(2월) 학위수여예정자는 전년도 10월 접수기간, 후기(8월) 학위수여예정자는 4월 접수기간까지 학습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2.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정해진 기간에만 각종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공휴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분기별 접수계획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표 3〉 일반적인 학습자등록 신청기간

구 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온라인 신청	12.15 - 1.29	4.1 - 4.29	6.15 - 7.29	10.4-10.31
방문 신청 (본원, 시·도교육청)	방문신청기간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교육기관 단체신청	해당 교육기관으로 신청가능여부·기간·방법 등을 문의			

■ 신청방법

학습자등록 신청은 온라인, 방문, 교육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4,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표 4〉 학습자등록 신청 방법 및 접수처

구 분	접 수 처
온라인신청	홈페이지→학습도움방→각종 온라인 신청 ※ 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알림방-자료실] 공지 627번 '[매뉴얼] 온라인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방법' 참고
방문신청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지하층 대강당 평일(월~금) 09:00~17:00(토·일, 공휴일 제외) 17개 광역시 이상 시·도교육청 평일(월~금) 09:00~16:00(점심시간, 토·일, 공휴일 제외)
교육기관 단체신청	학습자 본인이 이수중인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 학습자등록신청 시 제출서류

학습자등록신청 시에는 최종학력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고, 한번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표 5〉 학습자등록신청 시 제출 서류

구 분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공통	① 학습자등록신청서 출력본 1부 (신청 시스템 내에서 출력) ② 최종학력증명서(온라인 첨부서비스 이용자는 서류 제출 면제) 1부	① 학습자등록신청서 1부 ② 주민등록등(초)본 혹은 신분증(원본지참) ③ 최종학력증명서 1부
	• 학력에 따른 최종학력증명서 종류 - 고등학교 졸업(검정고시 포함) : 졸업증명서 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982년 1월 이후 졸업자는 홈페이지 민원서비스(www.neis.go.kr)를 통해 무료 발급가능) - 대학 졸업 : 졸업증명서 - 대학 재학(휴학) : 재학증명서 또는 휴학증명서 - 대학 제적 : 제적증명서 - 외국 학교 이수자 : 홈페이지-알림방-자료실 537번 '외국교육기관 학력인정안내'를 참고하여 필요서류 구비	
	※ 대학을 2곳 이상 이수한 경우, 각 대학의 최종학력증명서 제출(재적증명서의 경우 재적기간과 증명서 발급일이 동일한 경우 재학으로 간주함.) ※ 석사 이상의 학력증명서는 최종학력증명서로 인정하지 않음.	
특이사항	• 간호·보건계열 학습자등록 신청자 : “면허(자격)증명서” 원본 제출 * 면허(자격)증명서 발급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상단 [민원→의료인 면허 민원]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 아동학(아동·가족) 전공 학습자등록 신청자 중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 소지 증빙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문 신청하여 해당 자격증 사본(원본 지참) 제출 (홈페이지→공지사항 730번 참고)	
비고	• 아래 해당자는 온라인신청 서류제출 면제 - 고등학교 졸업자(검정고시 제외) : 학습자등록 온라인신청 페이지에서 본인이 입력한 고등학교 졸업 정보가 조회·확인 된 학습자(1982년 1월 이후 고등학교 졸업자, 정보활용동의자) - 대학 제적·졸업자 : 최종학력증명서 온라인 첨부서비스가 제공되는 대학 제적·졸업자 (단, 결제 후 환불 불가)	• 신청서식은 신청창구에 비치 혹은 홈페이지 [알림방-자료실 내 ‘학습자신청양식’]에 탑재 • 대리인 방문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원본 지참) 제출 (위임장은 홈페이지 [알림방-자료실 526번 ‘민원서류 위임장’]에 탑재)

※ 위 표에서 ‘대학’이라함은 대학·전문대학을 모두 의미함.

※ 학력인정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학력인정여부가 기재된 졸업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전수학교, 기술학교 등)

3. 학위과정 및 전공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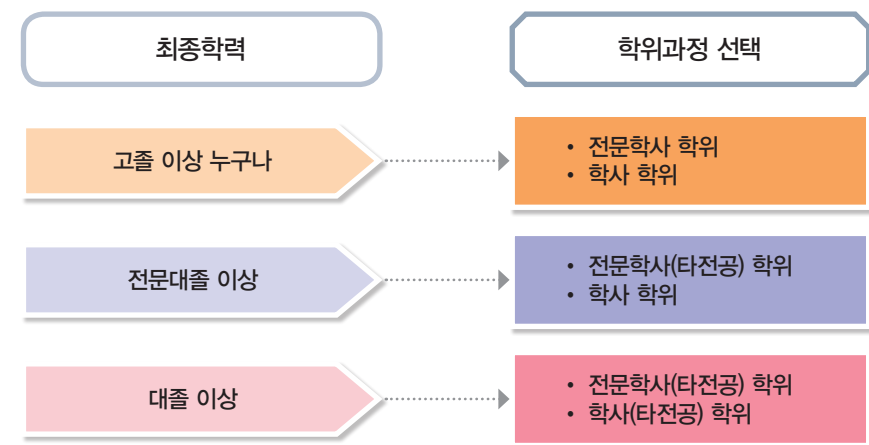
학점은행제 학위과정 및 전공은 표준교육과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표준교육과정은 매년 새롭게 개정·고시되고 있으므로, 학점은행제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되는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선택하는 학위과정 및 전공에 따라 학위수요조건이 달라지며, 학위과정별 학위수요조건은 44~4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학위과정

학사 학위는 4년제 대학 졸업 시 주어지는 학위이고, 전문학사 학위는 전문대학 졸업 시 주어지는 학위입니다. 고졸이상이면 누구나 전문학사 학위 혹은 학사학위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미 전문학사 혹은 학사학위를 소지한 학습자가 학점은행제를 통해 다른 전공의 학위를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타전공 학위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림 4] 최종학력별 선택 가능한 학위과정



■ 전공

‘제21차 표준교육과정(2016.8.1 시행)’기준으로 학사 114개, 전문학사 110개 전공이 개설되어 있으며, 홈페이지 [표준교육과정 → 학사 또는 전문학사]에서 학위과정별 전공 및 전공별 세부 교육과정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학사 학위 개설 전공

〈표 6〉 학사 학위 개설 전공

학위종류	표준교육과정 전공	개수
가정학사	식품조리학, (의상학)	1(2)
간호학사	간호학	1
경영학사	경영학, 무역학, 회계학, e-비즈니스학	4
경제학사	경제학	1
공학사	건축공학, 건축설비학, 게임프로그래밍학, 교통공학, 금속공학, 기계공학, 기계설계공학, 기관공학, 매체공학, 멀티미디어학, 메카트로닉스학, 산업공학, 섬유공학, 소방학, 안전공학, 음향공학, 자동차공학, 전기공학, 전자공학, 전파공학, 정보보호학, 정보통신공학, 제어계측공학, 조선공학, 컴퓨터공학, 토목공학, 항공정비공학, 화학공학, 환경공학	29
관광학사	관광경영학, 외식경영학, 호텔경영학	3
광고학사	광고학	1
군사학사	군사행정학, 군수관리학, 지상전학	3
무용학사	무용학	1
문학사	국어국문학, 노년학, 독어독문학, 문예창작학, 불교학, 사학, 상담학, 심리학, 아동학, 영어영문학, 일어일문학,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중어중문학, 철학, 청소년학, 프랑스어문학, 한문학	17
문헌정보학사	문헌정보학	1
미술학사	도예, 동양화, 사진학, 산업디자인, 시각디자인학, 실내디자인, 아동미술학, 공예, 화훼조형학, 회화	10
미용학사	미용학	1
법학사	법학	1
보건학사	물리치료학, 방사선학, 안경광학, 의무기록학, 임상병리학, 작업치료학, 치기공학, 치위생학	8
수사학사	범죄수사학	1
신학사	가톨릭신학, 신학	2
예술학사	디지털아트학, 모델학, 방송영상학, 연극학, 영화학	5
음악학사	관현악, 교회음악, 국악학, 성악, 실용음악학, 음악학, 작곡, 피아노	8
이학사	대기과학, 생명과학, 수학, 식품생명공학, 원예학, (전자계산학)	5(6)
지식재산학사	지식재산학	1
체육학사	건강관리학, 경호비서학, 체육학, 태권도학	4
패션학사	패션디자인학, 패션비즈니스학	2
해양학사	항해학	1
행정학사	부동산학, 사회복지학, 행정학	3
25개 학위, 114(116)개 전공		

※ '의상학' 전공과 '전자계산학' 전공은 폐지되었으므로, 신규 학습자등록신청이 불가함.

※ 제21차 표준교육과정(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에 의거 학사학위 과정에 '무역학' 전공이 신설.

※ **간호학사, 보건학사 전공자는 해당 전공 면허를 취득**해야만 해당 전공으로 학습자등록 및 전공과목 수강이 가능함. 또한 표준교육과정에 고시된 **전공필수과목**(간호학사: 7과목, 보건학사: 4과목)은 반드시 **평가인정학습과정으로 신규 이수**해야 함.

◆ 전문학사 학위 개설 전공

〈표 7〉 전문학사 학위 개설 전공

학위종류	표준교육과정 전공	개수
가정전문학사	생활교양, 식공간연출, 식품가공, 식품조리, 아동·가족	5
경영전문학사	경영, 마케팅정보, 무역, 산업·정보시스템경영, 전자상거래	5
공업전문학사	건축, 건축물관리, 게임그래픽, 게임디자인, 금형제작, 기계, 기계설계, 기계재료, 기계전자, 멀티미디어, 방송음향, 비파괴검사, 산업기계정비, 생산기계, 시스템제어, 안전공학, 열기계, 열냉동, 유비쿼터스설비제어, 용접공학, 인터넷정보, 임베디드시스템, 자동제어, 자동차정비, 자동차튜닝, 자동화설비, 전기, 전기공사, 전산응용건축설계, 전산응용기계, 전산응용기계설계, 전자, 전자기기, 정보보호, 정보시스템개발, 신재생에너지, 정보처리, 정보통신, 정보통신설비, 조선, 치공구설계, 컴퓨터그래픽, 컴퓨터네트워크, 토목, 항공정비, 화학공업, 환경관리	47
관광전문학사	관광경영, 관광식음료, 항공운항, 호텔제과제빵, 호텔조리	5
군사전문학사	군사행정, 군수관리, 지상전, 항공기술, 항공작전, 해상전	6
농업전문학사	관상원예, 농업경영	2
산업예술전문학사	가구디자인, 건축디자인, 광고디자인, 귀금속공예디자인, 도자기공예, 만화예술, 미용, 방송영상, 산업공예, 산업디자인, 세트디자인, 시각디자인, 연극, 영화제작, 인테리어디자인, 전자편집디자인, 컴퓨터산업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비즈니스	19
언어전문학사	영어, 일본어	2
생명산업전문학사	바이오공학, 애완동물관리	2
예술전문학사	공예, 국악, 기악, 뮤지컬, 미술, 사진, 실용무용, 실용음악, 화예	9
이료전문학사	이료(3년제)	1
행정전문학사	경찰행정, 보건행정, 비서행정, 사회복지	4
체육전문학사	바둑, 레저스포츠, 의전경호	3
13개 학위, 110개 전공		

※ 학점은행제 전문학사 과정 중 3년제 과정은 '이료' 전공만 개설되어 있음. 그 외 전공은 모두 2년제 과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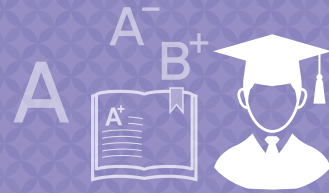
National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



Ⅲ 학점인정신청

1. 학점인정신청이란?
2. 신청기간 및 방법
3. 기타 신청
4. 학점원 소개 및 학점인정기준
5. 학점인정이 제한되는 경우

III 학점인정신청



1. 학점인정신청이란?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되는 교육과정 및 자격 등을 인정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학점인정신청 전에 학습자등록신청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 학점인정신청 시 주의사항

- 취득한 모든 학점(전적대학 이수학점 포함)은 학점인정신청을 해야만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처리완료까지 최대 2개월 정도 소요되므로, 취득학점은 빠른 접수기간에 학점인정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정해진 기간에만 각종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공휴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분기별 접수계획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표 8〉 일반적인 학점인정신청기간

구 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온라인 신청	12.15 - 1.29 (②12.15-1.15)	4.1 - 4.29	6.15 - 7.29 (⑧6.15-7.15)	10.4-10.31
방문 신청 (본원, 시·도교육청)	방문신청기간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교육기관 단체신청	해당 교육기관으로 신청가능여부·기간·방법 등을 문의			

※ 1/4분기, 3/4분기 괄호 안 신청기간은 학위수여대상자(②-2월, ⑧-8월)의 최종 학점인정신청 및 학위신청기간임.

■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 방문, 교육기관을 통해 신청가능하며 수수료는 1학점당 천원입니다.

〈표 9〉 학점인정신청 방법 및 접수처

구 분	접 수 처
온라인신청	홈페이지→학습도움방→각종 온라인 신청 ※ 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알림방-자료실] 공지 627번 '[매뉴얼] 온라인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방법' 참고
방문신청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지하층 대강당 평일(월~금) 09:00~17:00(토·일, 공휴일 제외) 11개 광역시 이상 시·도교육청 평일(월~금) 09:00~16:00(점심시간, 토·일, 공휴일 제외)
교육기관 단체신청	학습자 본인이 이수중인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 참고사항

- 온라인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우편서류도착 마감일 전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등기우편 발송해야함.
- 기초생활수급자는 학점인정신청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음. 단, 1개월 이내 발급받은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학점인정신청 접수 시마다 제출해야 하며, 학습자등록 및 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면제 대상이 아님.



신청 후, 처리과정 및 결과 확인하기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마이페이지-각종접수현황\]](#)에 가시면 처리과정 및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시·도교육청 방문접수 혹은 교육기관 단체접수 하였을 경우에는 '각종접수현황'에서 접수내역이 바로 확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고, 한번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표 10〉 신청 학점원별 제출 서류

구 분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평가인정학습과정	제출서류 없음	• 학점인정신청서 및 별지서식
학점인정대상학교	• 학점인정신청서 및 별지서식 • 이수 대학에서 발급한 졸업(제적)증명서, 성적증명서 ※ 2개 이상 대학 졸업(제적)자는 각 대학 졸업(제적)증명서, 성적증명서 모두 제출	좌동
시간제 등록	• 학점인정신청서 및 별지서식 • 이수 대학에서 발급한 성적증명서	좌동
자격	온라인신청 가능한 자격 및 제출서류는 매분기 공지하는 접수관련 공지사항을 참고	• 학점인정신청서 및 별지서식 • 자격 사본(원본지참) ※ 자격 합격확인서는 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않음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제출서류 없음.	• 학점인정신청서 및 별지서식
독학학위제 시험면제	• 학점인정신청서 및 별지서식 • 이수 기관에서 발급한 과정이수확인서, 성적증명서 ※ 온라인신청 페이지에서 이수과정이 확인되는 과목은 제출서류 없음.	좌동
중요무형문화재	• 보유자, 전수교육조교, 이수자 : 증빙서류 없음 • 전수생 : 보유자(보유단체장)가 증명하는 전수교육확인서 [홈페이지-알림방-자료실 학습자신청양식 620번 [서식 11] 중요무형문화재]	• 학점인정신청서 및 별지서식 • 이수등급별 제출서류 (35페이지 참고)
비고	• 학점인정신청서 및 별지서식은 신청 후, 온라인신청 페이지 내에서 출력 해야 함. • 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 신청서식은 신청창구에 비치 혹은 홈페이지 [알림방-자료실 내 '학습자신청양식']에 탑재되어 있음.

※ 위 표에서 '대학'이라함은 대학·전문대학을 모두 의미함.

※ 4년제 대학 졸업 시, 해당 성적증명서는 제출할 필요없음(학점인정 불가).

※ 대리인 방문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원본 지참) 제출
(위임장: 홈페이지 [알림방-자료실 526번 '민원서류 위임장(대리인 신청용)']에 탑재)

※ 2015년 9월 28일 이후 취득한 자격의 학점인정신청 시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요망
(자격취득시기와 고등학교 졸업일자에 따라 학점인정이 불가할 수 있음)

3. 기타 신청

■ 종류 및 내용

학습자등록이 되어 있는 학습자 중, 본인의 학습계획 등에 의해 등록 혹은 인정 내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아래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표 11〉 기타 신청 종류 및 내용

신청 종류	내 용
학위 및 전공변경 신청	현재 진행 중인 학위과정·전공을 다른 학위과정·전공으로 변경하는 절차
학위연계신청	학점은행제 학위수여자가 다른 학위과정·전공으로 새롭게 등록하고자 하는 절차
재심신청	학점인정신청 등에 따른 심의결과(학습구분)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절차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취소신청	처리 완료된 학습자등록 또는 학점인정의 취소를 희망하는 경우 신청하는 절차 * 기 납부된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음
전공·교양호환과목 학습구분변경 신청	학점인정이 완료된 전공·교양호환과목의 학습구분의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하는 절차 * 전공·교양호환과목 : 해당 학습자의 전공에서 전공 또는 교양으로 인정이 가능한 과목

※ 참고사항

- ① [학위 및 전공 변경신청], [학위연계신청]이 처리되면, 이미 인정받은 학점의 인정내역(학습구분 등)은 변경 혹은 연계 신청한 학위 및 전공의 표준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새롭게 변경됨.
- ② 학점인정 심의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경우 결과 통보를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학점인정 재심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 함. 즉 학점인정받은 분기 바로 다음 분기 재심신청기간에 재심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재심신청은 정해진 기간에 방문접수만 가능함.

■ 신청방법

학점인정신청기간 중에 신청할 수 있으며, 분기별 접수계획에 따라 일정이 변동되므로 각 분기마다 공지되는 접수계획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표 12〉 기타 신청 종류별 신청방법

신청 종류	신청방법	주의사항	수수료
학위 및 전공 변경 신청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학습도움방→ 각종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없음. • 접수 후, 5일 이내 처리됨.	없음 ⁵⁾
학위연계신청	• 교육기관 단체신청	• 학위 및 전공 변경 신청은 분기별 1회에 한해 신청가능	
학습자등록 및 학점 인정 취소신청	※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알림방-자료실] 공지 628번 [매뉴얼] 학위 및 전공변경, 학위연계 등 신청방법' 참고	• 학위 및 전공 변경신청, 학위연계신청 처리가 완료된 이후에 학점인정신청이 가능	
전공·교양 호환과목 학습구분 변경신청			
학점인정 재심신청	• 방문 신청 (본원, 시·도교육청) • 교육기관 단체신청	• 제출서류 ① 재심신청서(홈페이지→알림방→자료실→학습자 신청양식에 탑재) ② 해당 과목 이수 당시의 강의계획서 원본 (학과장 이상의 날인 필) 등	없음

4. 학점원 소개 및 학점인정기준

■ 학점원 소개

학점은행제에서는 학교에서의 수업 이수 외의 다양한 학습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정되는 학점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평가인정학습과정

대학부설 평생(사회)교육원, 학원, 직업전문학교, 각종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평가인정 받은 과목을 의미함.

학점인정대상학교(전적대학)

제적 혹은 졸업한 전문대학 및 제적한 4년제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
※ 졸업한 4년제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은 인정받을 수 없음.

시간제등록

시간제등록이란 대학(전문대학 및 사이버대학 포함)에서 일반인에게 해당 학교의 수업을 이수하게 하는 제도로써, 각 학교의 학칙에 의거하여 운영함.

자격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고시한 자격
※ 고시문에 포함된 자격만 학점인정가능함.

독학학위제

독학학위제 과정별 시험에 합격하였거나, 면제교육과정으로 이수한 과목

중요무형문화재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중요무형문화재 기·예능 보유자이거나, 그 전수자의 전수교육경험

※ 위의 학점을 취득하더라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학점원별 학점인정기준에 따라 학점이 인정되므로 세부적인 인정기준 및 주의사항을 숙지해야 함.

5) 학위연계 및 학위및전공변경 신청의 경우, 경우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음.

■ 학점인정기준

〈표 13〉 학점원별 학점인정 기준 요약표

구 분	학점인정의 기준	이수제한학점		중복 판단
		연간/학기	1개 기관 또는 대학	
평가인정 학습과정	- 출석률 80% 이상, 성적 60점(D°) 이상 또는 PASS 과목 1년/학기 최대 이수학점, 1개 교육기관 최대 인정학점 적용 - 학습구분 결정기준 : 표준교육과정에 근거하여 학습구분 결정	적용		○
학점인정 대상학교	- 전문대학은 최대 80학점(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최대 120학점) 까지, 제정한 대학은 최대 140학점까지 인정 - 성적이 60점 또는 D- 이상인 학습과목 인정(성적과 관계없이 F 학점은 불인정) - 학점인정대상학교 재학(휴학포함) 중인 자는 해당 학교에서 이수한 학습과목 인정불가 - 학습구분 결정 기준 - 동일한 학위과정 및 전공인 경우 : 대상학교의 학점부여 방식에 따름 - 학습과목의 분류가 분명하지 않거나, 동일학위과정 및 전공이 아닌 경우 :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구분 결정(단, 해당 학교에서 교양으로 이수한 과목은 교양으로 인정)	적용 (36페이지 참고)		○
시간제 등록	- 성적이 60점 또는 D- 이상인 학습과목 인정(성적과 관계없이 F 학점은 불인정) - 학습구분 결정 기준 : 학점인정대상학교 인정기준과 동일	적용		○
자격	- 학사는 최대 3개, 전문학사는 최대 2개 인정(단, 전공과 연계되지 않은 자격은 최대 1개 인정) - 타전공과정은 최대 1개만 인정 - 동일직무 내에 속한 자격은 1개만 인정 - 학습구분 결정 기준 : 고시되는 「자격학점인정 기준」적용, 전공 연계 자격은 전필, 연계되지 않은 자격은 일선	x		x
독학 학위제	1과정은 과목당 4학점(과정별 최대 20학점), 2~4과정은 과목당 5학점(과정별 최대 30학점) 인정 - 학습구분 결정 기준 : 1과정은 교양, 2~4과정은 분과위원회 심의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자에 한해 적용		○
중요무형 문화재	- 등급별 인정 학점 : 35페이지 참고 - 학습구분 결정 기준 : 이수경험과 동일한 전공을 선택할 경우 전필, 아닐 경우 일선	x		x

① 평가인정학습과정

‘평가인정학습과정’은 교육기관(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직업훈련시설, 학원, 각종 평생 교육시설 등)에서 개설한 학습과정에 대하여, 대학에 상응하는 질적 수준을 갖추었는가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평가한 과목으로, 이수 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학점인정 기준

- ▶ 100점 만점에 60점(D°) 이상 또는 PASS, 출석률 80% 이상인 학습과목에 한해 인정(단, 2005년 10월 27일 이전에 종강한 학습과목은 성적 70점 이상, 출석률 80% 이상이어야만 학점인정 가능함.)
- ▶ 1년/학기 최대 인정학점, 1개 교육훈련기관 최대 인정학점, 중복과목 제한 기준 적용
- ▶ 학습구분 결정기준 : 표준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전공필수, 전공선택, 교양, 일반선택 중 하나의 학습구분으로 결정(단, 전공·교양호환과목은 학습자의 선택에 따라 전공 혹은 교양으로 인정되나 본인의 전공과 연계된 과목이 아닌 경우 교양으로 인정)

○ 평가인정학습과정 이수방법

- ▶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및 기관별 평가인정학습과정은 학점은행제 홈페이지(www.cb.or.kr) [교육기관 정보 → 교육기관 검색]에서 확인
- ▶ 평가인정학습과정의 운영 제반사항(이수기간, 수강비용 등)은 각 기관의 자체적인 방침에 의해 결정되므로, 이수하고자 하는 기관으로 문의



● 기관 유사명칭 혼동 주의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이 아닌 곳에서 유사한 기관명칭을 사용하여 학습자에게 혼동을 주는 사례가 있어, 학습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학점은행제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하고자 하는 교육기관의 평가인정 여부 등을 확인하고 수강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학점은행제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사설업체(소위 학점은행 매니지먼트 또는 컨설팅업체)의 잘못된 학습설계 및 안내로 인한 학습자 피해사례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사설대행업체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확인방법

2016년 7월 현재, 평가인정학습과정이 개설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은 총 501개**입니다. 이 중, 온라인 수업이 가능한 원격교육기관은 총 78개이고, 나머지 기관은 출석하여 수업을 이수하는 방식입니다.

▶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검색 : 홈페이지 [교육기관 정보 → 교육기관 검색]

[그림 5]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검색 화면

② 학점인정대상학교

‘학점인정대상학교(전적대학)’는 「고등교육법」등에 따른 전문대학 혹은 대학 등으로, 학점인정대상학교 중퇴 혹은 졸업(전문대학) 시,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학점인정대상학교’의 종류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대학: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 대학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
- 사관학교, 경찰대학 등의 학교, 기능대학(다기능기술자과정에 한함), 사내대학 혹은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

○ 학점인정 기준

- ▶ **전문대학의 경우 최대 80학점(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최대 120학점)까지, 4년제 대학의 경우 중퇴 시 최대 140학점까지** 인정(졸업한 4년제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은 인정되지 않음).
예) 81학점을 취득하고 2년제 전문대를 졸업한 경우 : 1학점 학습과목을 제외하거나, 1학점에 해당하는 과목이 없을 경우 한 과목을 1학점을 절사하여 인정받을 수 있음.
- ▶ 성적이 60점 또는 D- 이상인 학습과목만 인정(성적과 관계없이 F학점 불인정)
* 성적 없이 ‘P’ 등으로 이수결과만 표기 된 과목 중, 학점이 기재되어 총 취득학점에 포함된 경우에는 학점인정 가능함.
- ▶ 중복과목 제한 기준 적용
* 단, 동일한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과목 간에는 중복과목 제한 기준 적용하지 않음(재수강 제외).
- ▶ 학점인정대상학교 재학 중 학점은행제를 이용하는 경우는 ‘1년/1학기 최대 이수학점’ 적용(36페이지 참고)
- ▶ 학습구분 결정기준
 - 표준교육과정과 동일한 학위과정 및 전공인 경우 : 대상학교의 학점부여 방식에 따라 학점인정.
예) 4년제 대학 영어영문학과 중퇴 후 학점은행제 학사학위과정 영어영문학 전공을 희망할 경우, 해당 학교의 학습구분대로 학점인정 가능
 - 학습과목의 분류가 분명하지 않거나, 동일 학위과정 및 전공이 아닌 경우 : 희망 학위 및 전공의 **표준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구분이 결정**됨. 단, 학점인정대상학교에서 교양으로 이수한 학습과목은 그대로 교양으로 인정 가능함.



- 홈페이지 → 교육기관 정보 → ‘학점은행제 우수기관’에서 **우수기관 목록** 확인가능
- 홈페이지 → 교육기관 정보 → ‘기관 지적사항’에서 **사후관리 결과 지적사항** 확인가능

③ 시간제등록

‘시간제등록’이란 「고등교육법」 제36조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4조제5항, 제57조제2항에 따라, 대학(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사이버대학 포함) 혹은 평생교육시설에서 일반인에게 해당 대학의 수업을 이수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 학점인정 기준

- ▶ 성적이 60점 또는 D- 이상인 학습과목만 인정(성적과 관계없이 F학점 불인정)
- ▶ 1년/1학기 최대 인정학점, 중복과목 제한 기준 적용
- ▶ 학습구분 결정기준은 학점인정대상학교와 동일함.

○ 이수방법

- ▶ 시간제등록생의 선발방법, 등록인원 등은 해당 학교 학칙으로 정하므로, 시간제등록의 시행여부, 개설과목, 수강비용 등의 제반사항은 해당 학교로 문의해야 함.
- ▶ 1개 대학에서 학기 및 연간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이 제한됨.
- ▶ 여러 학교를 병행하여 학기당 연간 최대 이수할 수 있는 학점 범위 내에서 이수할 수 있음.

〈표 14〉 1개 대학에서 시간제등록으로 이수할 수 있는 최대 학점

근거조항	1개 대학 최대 이수 학점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제9항	학기당 12학점, 연간 24학점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4조제5항, 제57조제2항	해당 대학의 매학기 취득기준학점의 1/2학점



- 사이버대학 종합정보시스템 : www.cuinfo.net
전국 사이버대학 및 학과소개, 입학정보 안내

④ 자격

학점은행제에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과 개별법에 의한 국가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 중 대학의 학점과 동등하게 인정될 수 있는 수준을 지닌 자격에 대하여 학점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학점인정 기준

- ▶ 학위종류별 자격 학점인정 기준

〈표 15〉 학위종류별 인정 가능한 자격 수

학위 종류	최대 인정 가능한 자격 수
학사	최대 3개(전공과 연계되지 않은 자격은 1개만 인정)
전문학사	최대 2개(전공과 연계되지 않은 자격은 1개만 인정)
타전공(학사, 전문학사)	최대 1개

- ▶ 동일직무 내 속한 자격은 최대 1개만 인정
* 동일직무란 자격 학점인정기준 내 [대분류-중분류-직무번호]가 동일한 것을 말함.
- ▶ 폐지된 종목의(통합 자격 제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자격의 학점을 인정
- ▶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에 의해 명칭이 변경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변경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변경된 자격의 학점인정 기준을 적용
- ▶ 통합 전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국가기술자격법 개정 시행일 이후, 통합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봄. 따라서 통합된 자격의 학점인정 기준을 적용하며, 최종적으로 통합된 하나의 자격만 인정
- ▶ 학습구분 결정기준 : 전공과 연계되는 자격은 ‘전공필수’로, 전공과 연계되지 않은 자격은 ‘일반선택’으로 인정
- ▶ 유효기간이 명시된 자격증은 유효기간 내에 학점신청을 해야 함.
- ▶ 전공변경, 학위연계 신청 시 당해 고시한 자격학점인정 기준에 따라 인정됨.



● 자격 학점인정기준 확인하기

자격 학점인정기준은 매년 고시되므로, 학점은행제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되는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제도소개→학점인정대상→자격] 혹은 [알림방→자료실/자격 학점인정기준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⑤ 독학학위제

‘독학학위제(독학에 의한 학위취득 제도)’는 국가가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학위를 수여해 대학에서 취득한 학위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혹은 시험 면제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습자에게는 과정별로 일정 학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독학학위제 제도 전반, 응시요건, 시험일정, 시험과목 등에 관한 사항은 독학학위제 홈페이지(bdes.nile.or.kr)를 통해 확인

○ 학점인정 기준

▶ 이수과정별 인정학점

〈표 16〉 독학학위제 이수 과정별 인정 학점

단 계	인 정 학 점
교양과정인정시험(1과정)	과목 당 4학점 (과정별 최대 20학점 인정)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2과정)	과목 당 5학점 (과정별 최대 30학점 인정)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3과정)	과목 당 5학점 (과정별 최대 30학점 인정)
학위취득종합시험(4과정)	과목 당 5학점 (과정별 최대 30학점 인정)

※ 단, 독학학위제 학위취득자는 과정별 학습과목에 대한 학점인정 불가

- ▶ 1과정부터 4과정까지의 과목별 학점인정은 1개의 학위과정 취득에만 적용
- ▶ 중복과목 제한 기준 적용되며,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학습과목에 한해 1년/1학기 최대 이수학점, 1개 교육훈련기관 최대 인정학점 적용
 - * 단, 독학학위제 학위취득종합시험(4과정) 과목과 1~3과정 과목 간에는 중복을 보지 않음.
- ▶ 학습구분 결정기준
 - 1과정 : 교양으로 인정
 - * 단, 일부 과목의 경우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에 기초하여 전공필수 혹은 전공선택으로 인정가능.
 - 예) 학점은행제 경영학 전공의 학습자가 독학학위제 ‘경영학개론’ 과목 합격 시, 전공필수와 교양 중 학습자가 원하는 학습구분으로 인정가능
 - 2과정~4과정 : 희망 학위 및 전공의 표준교육과정을 기준으로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구분 결정

⑥ 중요무형문화재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하며, 학점은행제에서는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시·도지정 문화재 제외) 보유자 및 그 문하생의 전수교육에 대한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학점인정 기준

▶ 이수등급별 인정학점

〈표 17〉 중요무형문화재 이수등급별 인정학점 및 증빙서류

이수등급	인정학점	증빙서류
보유자	140학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서 사본(원본지참)
전수교육조교	50학점	문화재청에서 발급한 조교증서 사본(원본 지참)
이수자	30학점	보유자가 문화재청에 보고한 이수증 사본(원본 지참)
전수생	3년 이상	보유자(보유단체장)가 증명하는 학습자전수교육확인서 * 홈페이지 [알림방→자료실 620번 ‘[서식 11] 중요무형문화재’] 탑재
	2년 이상	
	1년 이상	
	6개월 이상	

▶ 주의사항

- 중요무형문화재에 한해서만 학점인정이 가능하며, 시·도 지정 무형문화재의 경우 학점인정이 되지 않음.
- 1999년 7월 19일 이전 선정된 '보유자 후보'는 60학점, '전수교육조교'는 53학점, '전수교육보조자'는 50학점으로 인정
- 전수생의 경우 보유자나 보유단체가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이후,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장이 전수생에 대해 문화재청에 보고하거나 등록장부를 만들어 전수생을 관리한 경우에 한해 학점인정이 가능함 (일반회원 자격으로 전수받은 경험은 학점은 불인정).

▶ 학습구분 결정기준

- 전수경험과 동일한 전공을 선택할 경우 전공필수로, 전수경험과 동일하지 않은 전공을 선택할 경우 일반선택으로 인정
 - 예) 강령탈춤 이수자가 학점은행제 전통연희과 강령탈춤 전공을 선택할 경우 전공필수 30학점 인정, 그 외 전공을 선택할 경우에는 일반선택 30학점으로 인정

5. 학점인정이 제한되는 경우

① 1년/1학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

수업으로 이수한 학점 중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 1년에 최대 42학점이며, 한 학기 최대 24학점까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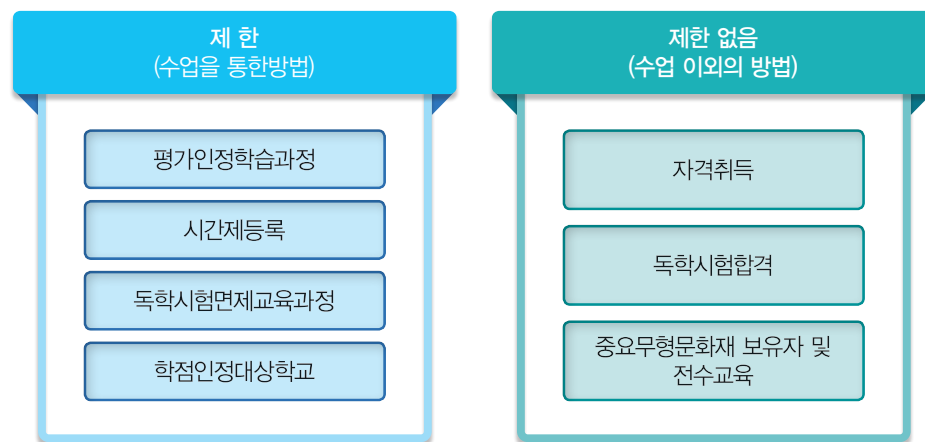
○ 1년/1학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의 제한

연간이수 제한 학점	학기당 이수 제한학점
42학점	24학점

○ 1년/1학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에는 [그림 6]과 같이 수업을 통한 방법은 포함되지만, 수업 이외의 방법은 포함되지 않음.

* 단, 학점인정대상학교에서 이수한 학점은 해당 학교와 동일한 연도/학기에 타 학점원(평가인정학습과정, 시간제등록, 독학학위제 시험면제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 한해, 1년/1학기 제한학점 기준을 적용 받음.

[그림 6] 1년/1학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에 포함되는 학점원



○ 1년은 당해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를 의미하고, 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말일까지, 2학기는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구분, 이는 수업이 끝나는 날(종강일)을 기준으로 함.

[그림 7] 학기의 구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 8월말						9월 ~ 2월말					
1학기						2학기					
1년											

○ 학위수여예정자의 최종 학기는 아래와 같이 적용

〈표 18〉 학위수여예정자의 최종 학기 구분

구 분	최종 학기
전기(2월) 학위수여예정자	9월 1일 ~ 다음해 1월 15일
후기(8월) 학위수여예정자	3월 1일 ~ 7월 15일

즉, 전기(2월) 학위수여예정자는 1월 15일까지, 후기(8월) 학위수여예정자는 7월 15일까지 학습이 종료되어 성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출할 수 있는 학점에 한해 인정 가능함.

예) 2016년 전기(2월) 학위수여예정자가 2016년 1월 16일 이후 취득한 학점에 대해서는 학점인정 받을 수 없음.

② 1개 교육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학점

[평가인정학습과정] 및 [독학학위제 시험면제교육과정]으로 이수한 학점은 1개 교육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표 19〉 1개의 교육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학점

구 분	최대 인정 학점
학사학위 과정	105학점
전문학사학위 과정	60학점(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90학점)

※ 단,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과정 중「초·중등교육법」제54조제4항에 따른 고등기술학교 전공과는 전문학사 과정에서 1개 교육기관 최대 인정학점 제한을 받지 않음.

-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중 고등기술학교 : 청암예술학교(2016년 7월 기준)

③ 중복과목 인정기준

[평가인정학습과정], [학점인정대상학교], [시간제등록],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및 시험면제교육과정]으로 이수한 과목 중 중복과목이 있을 경우, 1개 과목만 학점인정 가능합니다.

〈표 20〉 중복과목 판단의 기준 및 예시

구 분	중복과목 판단의 기준	예 시
1	과목명이 동일한 과목 (외국어일 경우 원어의 대소문자 비구분)	영어 = 영어 ENGLISH = English
2	띄어쓰기 여부와 관형격 조사의 사용여부만 다르고 의미가 같은 과목	회계 입문 = 회계입문 인터넷의 이해 = 인터넷 이해
3	문장 부호와 특정 조사·부사를 사용하지 않을 때 나열형으로 의미가 같은 과목	S/W 활용 = SW활용 EDPS = E.D.P.S 한국 근·현대사 = 한국근현대사 가족상담 및 치료 = 가족상담·치료
4	첫 번째 서열의 과목이거나 숫자의 의미가 같은 과목	전공실기 = 전공실기Ⅰ = 전공실기 I
5	약칭 또는 줄임말로 기재된 과목	클라이언트/서버 프로그래밍 = C/S 프로그래밍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 PS 콘크리트

※ 주의사항

- 위 처리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과목명 내 고유 명사가 포함되었을 경우, 과목 내용과 형식이 다를 경우, 별도 심의에 의해 인정 또는 불인정된 경우, 관련 법·규정 등에 따라 별도의 기준이 있을 경우 등
- 아동학(아동·가족 전공), 간호·보건계열 전공과목은 별도 기준이 적용됨.
- 고시가 개정되면 개정 고시 내용으로 시행
(홈페이지 → 알림방 → 공지사항 → 각종 고시·규정개정 → '중복과목 및 대체과목 처리 기준' 참고)

④ 학점은행제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학사학위 연계 시 주의사항

학점은행제 전문학사학위(2년제)를 취득한 자가 학점은행제 학사학위과정으로 연계 시, 최대 80학점까지만 인정됩니다.

- ❖ 80학점을 초과 인정받고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학습자가 선택하는 학습과목을 제외 혹은 절사하여 학위연계신청을 해야 함.
예) 81학점으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 1학점 학습과목을 제외하거나, 1학점에 해당하는 학습과목이 없을 경우 한 과목을 1학점 절사하여 인정받을 수 있음.
- ❖ 전문학사 학위과정에서 인정받지 않은 미신청 학점(평가인정학습과정, 시간제등록, 학위수여 전에 학점인정대상학교에서 이수한 학점 등)이 있는 경우, 학사학위연계 시 인정받을 수 없음. 단, 전문학사 학위과정에서 인정받지 않고, 다른 학위과정에도 포함되지 않은 [자격],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중요무형문화재] 학점은 학사학위연계 시 인정가능함.

⑤ 대학 재적(재학, 휴학)생의 학점은행제 이용 주의사항

대학(학점인정대상학교) 재적 중에 학점은행제를 이용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으나, 이후 해당 대학 과목을 학점으로 인정받거나 학점은행제로 학위취득 하고자 할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 아래의 학습자가 대학 이수학점과 타학점원(평가인정학습과정, 시간제등록, 독학학위제 시험면제교육과정)을 모두 학점은행제로 인정받고자 한다면, 1년/1학기 최대 이수학점(1년 42학점, 1학기 24학점) 범위 내에서 학점 인정됨.

- ▶ 전문대학, 대학 재적(재학, 휴학)학기 중 타학점원을 이수하고 졸업한 경우
- ▶ 전문대학, 대학 중퇴 후 중퇴한 연도에 타학점원을 이수한 경우

- ❖ 전문대학, 대학 재적 중인 자는 해당 대학에서 이수한 학습과목을 인정받을 수 없고, 대학 중퇴 혹은 졸업 시에만 인정이 가능함(단, 졸업한 4년제 대학 이수학점은 인정되지 않음).
- ❖ 전문대학, 대학 재적 중 학점은행제 학점을 이수하고 대학을 졸업한 뒤, 학점은행제 타전공 학위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타전공 학위과정에서는 학위취득 이후에 이수한 학점만 인정가능하므로, 전문대학·대학 졸업 이전에 이수한 학점은 인정받을 수 없음.
- ❖ 전문대학, 대학 재적 중 학점은행제 학점을 이수한 경우, 해당 학점은 타전공 과정이 아닌 일반 학사 또는 전문학사 과정으로 등록

National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



Ⅳ 학위신청

1. 학위신청이란?
2. 신청 기간 및 방법
3. 학점은행제 학위수여요건

IV 학위신청



1. 학위신청이란?

학위신청이란 학위요건이 충족되어 학위취득을 희망할 경우, 그 의사를 표명하는 절차입니다.

■ 학위신청 시 주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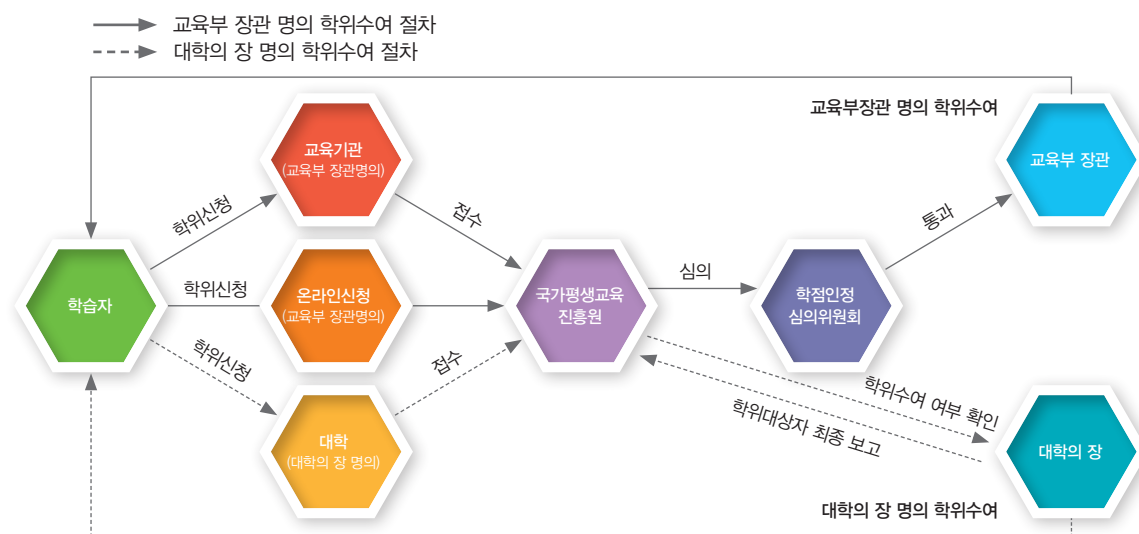
- 학위요건 충족 시 자동으로 학위수여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학점은행제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학습자는 정해진 기간 중에 '학위신청'을 해야 합니다.
- **대학의 장 명의 학위수여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대학으로 학위신청을 해야 합니다.**
- 학위수여 이후 학습자의 개인사유에 의한 학위취소는 불가합니다. 단,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교육부장관 또는 대학의 장 등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학위신청 시 미신청한 학점은 추후 다른 학위과정으로 연계 시 추가로 학점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 학위수여 절차

학점은행제 학위는 교육부 장관 명의 혹은 대학의 장 명의로 수여받을 수 있고, 매년 2월과 8월, 두 번 학위수여가 이루어집니다.

(단, 학위수여식은 매년 2월에 한번만 개최)

[그림 8] 학점은행제 학위수여 절차



2. 신청기간 및 방법

정해진 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공휴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분기별 접수계획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기관 신청자 또는 대학의 장 명의 학위신청자는 해당 기관 또는 대학으로 문의)

〈표 21〉 일반적인 학위신청 기간 및 방법

구 분	접수처	신청 기간	신청 방법
교육부 장관 명의 학위	국가평생교육 진흥원	전기(2월): 12월 15일~다음해 1월 15일 후기(8월): 6월 15일~7월 15일	온라인신청 [홈페이지]→학습도움방→각종온라인 신청 (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알림방-자료실] 공지 635번 '[매뉴얼] 교육부장관 명의 온라인 학위 신청방법' 참고
	교육기관	전기(2월): 12월 1일 ~ 12월 12일 후기(8월): 6월 1일 ~ 6월 12일	해당 기관 혹은 대학으로 문의
대학의 장 명의 학위	해당 대학		해당 기관 혹은 대학으로 문의

※ 주의사항

- 전기(2월) 학위수여예정자는 10월, 후기(8월) 학위수여예정자는 4월 신청기간까지 학습자등록신청을 완료해야 함.
- 학위수여예정자는 학위신청기간에 최종적인 학점인정신청 및 학위신청을 모두 완료해야 하고, 등록된 학위과정 및 전공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학위신청'을 해야 함.
- 학위신청 마감 후 학위요건심사 결과확인방법을 홈페이지에 공지함. 정해진 기간동안 [학위합격/탈락 여부]를 스스로 확인해야 함(교육기관 신청자 또는 대학의 장 명의 학위신청자는 해당 기관 또는 대학을 통해 확인해야 함).

3. 학점은행제 학위수여요건

① 학위수여요건

학점은행제 전문학사 또는 학사 학위 취득을 위한 학위수여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 22〉 학점은행제 학위수여요건

구 분		학사 학위	전문학사 학위		비 고
			2년제	3년제	
①	총학점	140학점 이상	80학점 이상	120학점 이상	공통
②	전공	60학점 이상	45학점 이상	54학점 이상	
③	교양	30학점 이상	15학점 이상	21학점 이상	
④	이수학점 중 평가인정학습과정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해 이수한 학점이 반드시 학위과정별로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함.				교육부장관 명의 학위수여*
⑤	전공필수는 희망하는 표준교육과정 전공에 따라 학점 수 또는 과목 수로 반드시 충족해야 함. 전공별 필요한 학점 수 또는 과목 수는 표준교육과정에서 확인.				
⑥	해당대학의 학점	84학점 이상	48학점 이상	65학점 이상	
⑦	해당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대학의 장 명의 학위수여**

* 일반적으로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위 수여 시에는 교육부장관에 의한 학위를 받게 됨.

**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가 가능하나, 세부적인 학위요건은 해당 대학의 학칙에 따라 정해지므로 해당 대학에 문의하여야 함.

■ 기술계학원 활성화정책의 일환으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중 ‘기술계학원’에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 교양 학점 취득기준을 달리 적용합니다.

〈표 23〉 기술계학원에 대한 교양학점 탄력운영제

기술계학원에서 이수한 총 학점		교양학점 최소 이수학점
학사	85학점 이상	21학점 이상
전문학사	65학점 이상(3년제)	15학점 이상
	50학점 이상(2년제)	9학점 이상

※ 기술계학원은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교육기관정보-교육기관검색-기관/전공별 검색 내 ‘유형: 기술계학원’]에서 검색가능

② 타전공 학위수여요건

타전공 학위란, 학사 학위 또는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포함)가 학점은행제를 통해 다른 전공의 학사 학위 또는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하고자 선택하는 학위과정입니다. 전문학사 학위 소지자라면 전문학사 타전공 학위, 학사학위 소지자라면 전문학사 타전공 혹은 학사 타전공 학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표 24〉 타전공 학위수여요건

학사(타전공) 학위	전문학사(타전공) 학위	
	2년제	3년제
전공 48학점 이상 이수	전공 36학점 이상 이수	전공 42학점 이상 이수

* 전공필수요건(전공필수는 희망하는 표준교육과정 전공에 따라 학점 수 또는 과목 수로 반드시 충족해야함. 전공별 필요한 학점 수 또는 과목 수는 표준교육과정에서 확인) 포함해야 함.

* 평가인정학습과정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해 전공 18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 타전공 학위과정 진행 시 모든 학점원은 학위취득 이후 이수한 학점에 한하여 인정 가능함. 또한 자격증은 최대 1개까지만 인정 가능함.

(단,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에 의거 개정된 시행령 시행 전(2015.9.27)까지 학점인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개정 법령에 따라 학점인정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따라서 자격증과 중요무형문화재의 경우 학점취득시기에 따라 인정기준이 달라질 수 있음.)

※ 졸업한 전문대학, 대학 학점은 타전공 과정에 인정불가함.

※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가 가능하나 세부적인 학위요건은 해당 대학의 학칙에 따라 정해지므로 해당 대학에 문의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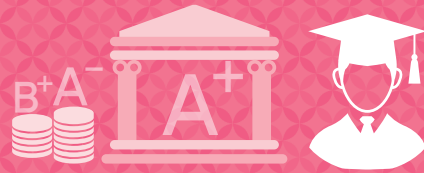
National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



› 제도 활용

1. 시험 응시자격 부여
2. 자격(면허) 취득

V 제도 활용



학점은행제를 활용하여 응시 가능한 시험 혹은 취득 가능한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확한 시험 응시요건 및 자격 발급요건 등은 각 주관처로 문의**하여야 합니다.

1. 시험 응시자격 부여

〈표 25〉 학점은행제로 응시 가능한 시험

시 험 명	응시 요건
국가기술자격 시험	- 기사 : 학점은행제 관련전공 학사학위 취득자 또는 106학점이상 인정받은 자(학점인정대상학교 학점 외의 학점이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함.) - 산업기사 : 학점은행제 관련전공 전문학사 학위 취득자 또는 41학점이상 인정받은 자 - 문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http://q-net.or.kr, 1644-8000)
독학학위제 시험	1~3과정은 고졸 이상 학력소지자라면 지원이 가능하며, 4과정은 학점은행제와 동일전공으로 일정학점을 인정받아야 함. 1~3과정 :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을 소지한 자 4과정 : 학점은행제로 105학점(전공 16학점 포함) 이상 인정받은 자 - 문의처 : 독학사관리실 (http://bdes.nile.or.kr, 1600-0400)
공인회계사 시험	회계학 및 세무관련과목 12학점 이상, 경영학과목 9학점 이상, 경제학과목 3학점 이상을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자 문의처 : 금융감독원 (http://cpa.fss.or.kr, 국번없이 1332)
사법시험	법학과목 35학점 이수한 자 문의처 : 법무부 사법시험 (www.moj.go.kr/barexam, 02-2110-3397, 3525)
편입학 시험	학점은행제 전문학사 혹은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자세한 요건은 각 대학 입학관리처로 문의
대학원 입학 시험	학점은행제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단, 특수·전문대학원 등은 선수과목 이수 등 최종학력 이외의 별도 자격을 요구할 수 있음. 자세한 요건은 각 대학원 입학관리처로 문의

2. 자격(면허) 취득

〈표 26〉 학점은행제로 취득 가능한 자격

자 격 명	자 격 요건
사회복지사 2급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학점은행제 학위 포함)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문의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http://lic.welfare.net, 02-786-0845~7)
보육교사 2급	학점은행제를 통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보육 관련 교과목을 포함하여 전문학사 또는 학사 학위를 취득해야 함)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의 개정(16.1.12)으로, 보육교사 자격(2급) 취득 기준이 변경되었음.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2017년 8월 학위취득자까지는 종전기준(17과목 5학점 이상)을 적용받을 수 있음. 영역별 필수과목 변경, 대면교육 강화, 보육실습 기준 등이 강화되었고 학위취득시기와 과목 이수시기에 따라 자격발급기준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자격주관기관을 통해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진행해야 함. 문의처 :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 (http://chrd.childcare.go.kr, 1661-5666)
평생교육사 2,3급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2009년 8월 9일 이후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 포함)로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과목(평균 80점 이상)을 이수한 자 문의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습계좌·자격실 (http://lledu.nile.or.kr, 1577-3867)
건강가정사	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학점은행제 학위 포함)에서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문의처 : 건강가정지원센터 (http://www.familynet.or.kr, 1577-9337)
2급 정사서	학점은행제 문헌정보학 전공으로 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 문의처 : 한국도서관협회 (http://www.kla.kr, 02-537-6117)
이·미용사	학점은행제를 통해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위(전문학사, 학사)를 취득한 자 문의처 : 가까운 시·군·구청
한국어교원 2급	학점은행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전공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한국어교원 2급 자격 관련과목 45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문의처 :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http://kteacher.korean.go.kr, 02-2669-9671~4)
청소년지도사 2,3급 (필기시험 면제)	자격 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자는 필기시험이 면제되어, 필기시험 없이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이 경우, 학점은행제 청소년학 전공으로 등록) 문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http://q-net.or.kr, 1644-8000)
문화예술교육사 2급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시행령 [별표]에 의거 필요한 학력(경력)요건 및 교육과정 이수 요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자격발급이 가능함.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http://acei.arte.or.kr, 070-7825-1460)

※ 주의사항

- * 위 자격요건은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자세한 요건 및 변경 사항은 해당 자격 발급처로 문의하시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보육교사 자격 취득 시에는 자격 관련 교과목을 모두 인정받고 학점은행제 학위를 취득해야 합니다.
 - 보육교사 관련 교과목 중 1과목이라도 누락하고 학위를 취득할 경우, 자격발급이 되지 않음.

National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



› 학습 지원

1. 증명서 발급
2. 상담 서비스
3. 학습도움자료

VI 학습 지원



1. 증명서 발급

■ 증명서 종류

학점은행제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표 27〉 학점은행제 증명서 종류

종 류	내 용	발급형태
학위증명서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을 증명하는 문서 * 제출용, 추가 발급 가능	국문/영문
학위수여 예정증명서	학점은행제 학위수여 예정임을 증명하는 문서	
성적증명서	학점은행제로 인정받은 학점에 대한 자세한 내역 및 성적이 기재된 문서	
학점인정증명서	학습구분, 학점원에 따른 인정학점이 기재된 문서 * 이수과목, 성적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	
기타	- 학점인정증명서(한국산업인력공단 제출용) - 법학과목 학점취득증명서(사법시험 제출용) - 학점취득증명서(공인회계사시험 제출용) - 교육비납입증명서	국문

※ 주의사항

- 학점은행제 **‘성적증명서’상에 성적이 기재되고 평점에 포함되는 학점원은 평가인정학습과정, 시간제 등록을 통해 이수한 학점**이며, 학점인정대상학교, 자격, 독학사 시험합격, 중요무형문화재를 통해 이수한 학점은 성적이 기재되지 않으며 평점평균에 포함되지 않음.
- ‘학위수여예정증명서’는 인터넷발급만 가능**하며, **일정학점(전문학사: 40학점, 학사: 100학점)이상 인정 받은 자**만 발급 신청할 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학습도움방→신청방법안내→증명서신청] 내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발급 시 유의사항’ 참고.
-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서 수강한 과목에 대해서만 ‘교육비납입증명서’발급이 가능함.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에서 수강한 과목은 해당 기관에서 발급)

■ 신청 및 발급방법

〈표 28〉 학점은행제 증명서 발급 방법

구 분	신청 방법	발급 수수료
인터넷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로그인 후 [학습도움방→각종 온라인 신청]에서 ‘증명서 신청’ 메뉴 클릭	국/영문: 500원 (추가 1통당 100원)
방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발급 (신분증 지참) *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국문: 300원 영문: 500원
우편	‘증명서발급신청서’와 ‘증명서 및 우편 수수료 입금증’ 사본을 팩스(02-3780-9850) 혹은 우편으로 송부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알림방→자료실 574번 ‘증명서 발급안내 및 우편수령 신청서’] 참고	국문: 300원 영문: 500원 (우편수수료 별도)

※ 주의사항

- ‘학위증’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학위취득일 이후 방문 혹은 우편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음.
- 방문 신청 시, 대리인이 방문하여 발급받을 경우에는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원본 지참) 제출
* 홈페이지 [알림방→자료실 526번 ‘민원서류 위임장(대리인 신청용)’]에 위임장 탑재
- ‘공인회계사 학점취득증명서’는 인터넷 발급이 불가함. ‘성적증명서’ 제출로 시험응시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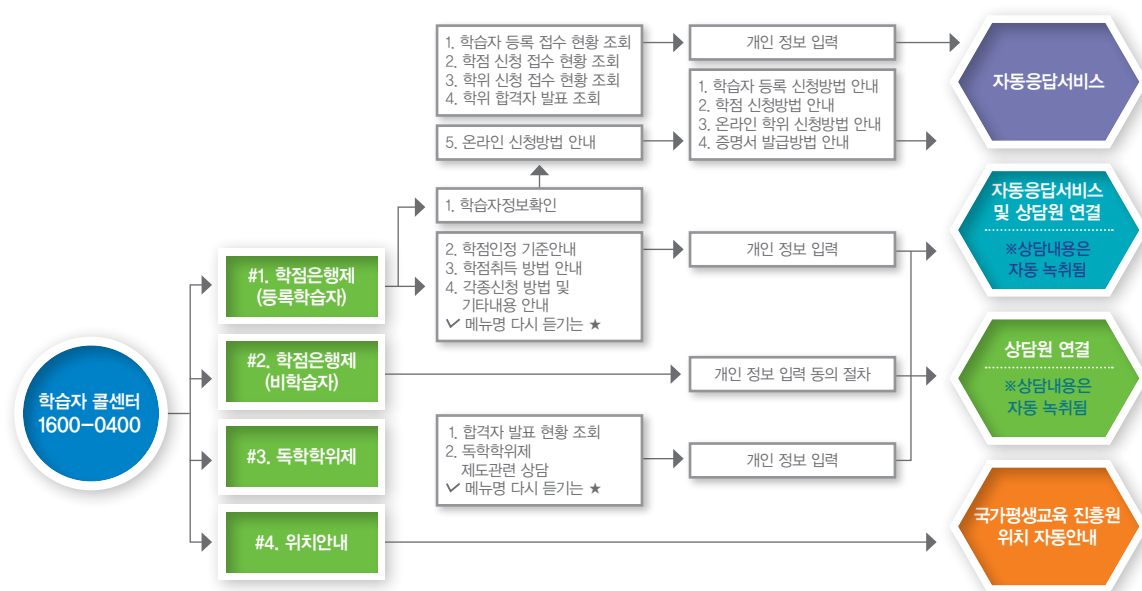
2. 상담 서비스

■ 전화상담

학점은행제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상담지원을 위해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전화번호 : (국번없이)1600-0400
- 운영시간 : 평일 09:00~18:00
- 이용방법 : 문의사항에 따른 번호를 선택하고, 안내 메시지에 따라 [개인정보(학번 또는 생년월일)] + [#] 입력 후 자동응답서비스 또는 상담원 연결

[그림 9] 콜센터상담 도식도



- ※ 각종 신청기간(1,4,7,10월)에는 문의량이 증가해 콜센터 연결이 어려울 수 있음.
- ※ 모든 상담내용은 학습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자동 녹취됨.
- ※ 학점은행제 콜센터는 발신자 부담서비스

[표 29] 전화상담 범위

상담구분	상담가능여부	기타
제도전반	가능	
학습설계	불가	온라인 혹은 방문만 가능
학점취득방법(학습구분, 중복과목 등)	가능	5개 이상 과목은 온라인으로 문의
행정사항	가능	

■ 온라인 일반상담

학점은행제 이용에 관련 일반적인 문의사항은 온라인으로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용 방법 : 홈페이지 로그인 후 [학습도움방→상담신청→온라인 일반상담→신청하기]에서 문의내용 작성

[표 30] 온라인 일반상담 구분

구분	내용
제도전반	학점은행제 제도 전반 및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음. ※ 단, 전반적인 내용은 홈페이지 상담 [제도소개] 내용을 먼저 읽어보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중심으로 문의요망
학점취득방법	6가지 학점취득방법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문의할 수 있음.
학점인정신청/등록	학점인정신청기간, 신청한 학점의 처리유무, 환불사항 등과 같이 학점인정신청 및 처리 절차와 관련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음.
중복과목	홈페이지 상담 [제도소개→제도이용 주의사항→학점인정 주의사항] 중 '중복과목에 대한 학점인정' 부분을 확인하고,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과목을 중심으로 과목 간 중복여부를 문의할 수 있음. ※ 홈페이지 [알림방-공지사항 10178번 '학점은행제 중복과목 및 대체과목 처리 기준 고시'] 참조
학습구분	이수하거나 이수 예정인 개별 과목의 학습구분(전공, 교양 인정여부 등)을 문의할 수 있음. ※ 단, 보유학점을 토대로 학위요건에 대한 검토 및 학점인정대상학교(전적대학)에서 이수한 전체 학점에 대한 학습구분 문의는 '온라인 학습설계 상담'을 이용

■ 온라인 학습설계 상담

온라인 학습설계 상담이란 현재까지 취득한 학점이 어떻게 학점인정 되는지를 미리 알아보고, 이에 근거하여 희망전공에서의 학위수여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학점이수계획을 세워 볼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상담시스템입니다. 다만 학습설계 상담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야 하고, 정확한 학점인정내역은 실제 학점인정신청 후 처리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 이용 방법 : 홈페이지 로그인 후, [학습도움방→상담신청→온라인 학습설계 상담]에서 신청
 - ※ 학점은행제 미등록 학습자는 학습설계 상담신청 시 이수내역 확인 및 본인 확인 등을 위해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함.
 - ※ 홈페이지 [알림방→자료실 536번 '온라인 학습설계 매뉴얼'] 참조

■ 방문상담

학습자들의 시간, 편의, 효율성을 위하여 사전예약제로 운영됩니다. 예약을 하지 않고 본원에 방문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약신청 방법 : 홈페이지 로그인 후 [학습도움방→상담신청→방문상담] 메뉴에서 예약 신청
- 구비서류 : 상담 예약증, 신분증, 보유학점에 대한 증빙서류 원본 및 사본 1부
(증빙서류 미지참 시 상담서비스 제공 불가)
- 대리인을 통한 방문상담 신청 시 필요서류 : 위임장 1부(학점은행제 홈페이지 [알림방] - [자료실: 472번 방문상담 위임장 및 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서]), 학습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원본 및 사본 각 1부, 취득학점을 증빙하는 증빙서류 및 방문상담 예약 확인증
- 기타 : 방문 학습설계 상담 시 제공되는 내용은 '온라인 학습설계 상담'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안내받을 수 있음. 학점인정신청기간 및 학위수여업무기간 등에 따라 방문상담 예약이 제한될 수 있음.

3. 학습도움자료

■ 학점인정 표준 DB 검색 기능

「학점인정 표준DB」는 학점인정대상학교(전적대) 또는 시간제로 이수한 과목의 학습구분을 학점은행제 전공에 따른 학습구분(전공, 일선 등)으로 안내하는 메뉴입니다.

－ 메뉴위치 : 홈페이지→학습도움방→학점인정 표준 DB

－ 공개전공(2016. 7월 기준)

- * 학사 : 경영학, 사회복지학, 아동학, 미용학, 컴퓨터공학 등 24개 전공
- * 전문학사 : 경영, 사회복지, 아동가족, 실용음악 전공
- * 교양

－ 주의사항

- ※ 해당 메뉴에서 학습구분이 확인되는 과목명과 다른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학점인정신청 또는 학습구분 상담을 통해 학습구분을 확인해야 함.
- ※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한 평가인정학습과정은 본 메뉴와 관계없으며, 표준교육과정과 완전히 일치해야만 전공 또는 교양으로 인정됨.
- ※ 확인되는 과목은 일반적인 기준이므로 참고 자료로 만 활용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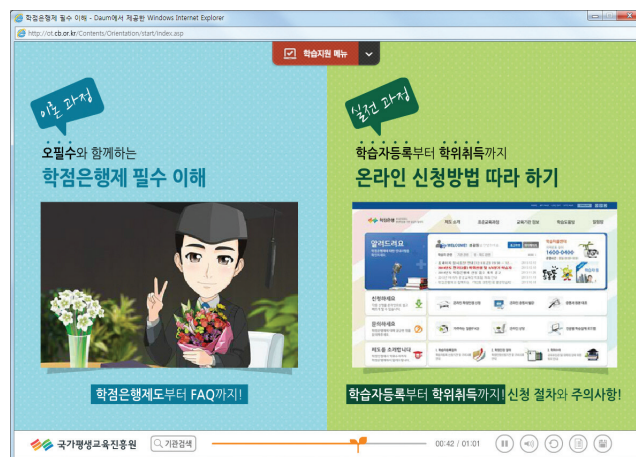
■ 학점은행제 첫걸음 동영상 제공

「학점은행제 첫걸음 동영상」은 학점은행제 이용 학습자들의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한 학점은행제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입니다.

－ 주요내용 : 이론과정(학점은행제도 부터 FAQ까지), 실전과정
(학습자 등록부터 학위취득까지 신청절차와 주의사항)

－ 이용방법 :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초기화면 하단 우측 배너 「학점은행제 첫걸음 동영상」 클릭

[그림 10] 학점은행제 첫걸음 동영상 화면



■ 리플렛

학점은행제 리플렛은 학점은행제 이용을 돕고자 주제별로 간단한 설명을 담고 있는 간행물입니다.

－ 이용방법 : [알림방→자료실→간행물] 내 ‘2016 학점은행제 리플렛(1),(2)’ 다운로드

－ 종류 :

번 호	종 류
1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에서 학위수여까지
2	학점취득 방법
3	학점은행제 이용 시 주의사항
4	학점은행제를 활용하여 각종 자격을 취득하는 방법 안내
5	학점은행제 서식 작성방법
6	학점은행제 상담신청 방법
7	외국교육기관 이수자의 학점은행제 이용

National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



› 부록

1. 학점인정관련 주요 변경 내용
2. 웹진으로 보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3. 시·도 교육청 방문접수처

VII 부 록



1. 학점인정 관련 주요 변경 내용

- 규정 개정에 따른 학점인정 관련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31〉 학점인정관련 주요 변경 내용

관련 규정	내 용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비교2	• 중요무형문화재를 제외한 모든 학점원은 고등학교 졸업(학력취득) 이후 이수 또는 취득한 학점에 한해 학점인정 가능함. • 시행시기 : 2015.9.28 • 기타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에 의거 개정된 시행령 시행 전 (2015.9.27)까지 학점인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개정 법령에 따라 학점인정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따라서 학점취득시기에 따라 인정기준이 달라질 수 있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비교5	• 타전공 진행자의 경우 모든 학점원은 학위취득 이후 이수 또는 취득한 학점에 한해 학점인정이 가능함. • 시행시기 : 2015.9.28 • 기타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에 의거 개정된 시행령 시행 전 (2015.9.27)까지 학점인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개정 법령에 따라 학점인정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따라서 자격증과 중요무형문화재의 경우 학점취득시기에 따라 인정기준이 달라질 수 있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제4호	• 독학학위제로 학위를 취득한 경우 해당 학습자의 과정별 시험합격 또는 면제 교육과정 이수결과는 학점으로 인정하지 않음. • 시행시기 : 2015.9.28 • 기타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전에는 교육부 지침에 의거 자격취득(공인회계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독학학위제 학위취득자의 과정별 시험합격 및 면제교육과정 이수 결과를 학점으로 인정하였음. 이 경우에도 학점은행제 학위취득과 관련된 학점으로는 인정불가하였음. 2015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예외규정없이 독학학위제 학위취득자의 과정별 시험합격 및 면제교육과정 이수 결과는 학점인정이 불가하게 됨.
학점인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IV. 학점인정 기준 및 절차 - 3. 학점인정 절차	• 학습자가 학점인정 심의결과에 대해 재심의 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점인정받은 분기 바로 다음 분기 재심신청기간에 재심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재심신청은 정해진 기간에 방문접수만 가능함. ※ 교육훈련기관 단체 접수는 별도 접수공지에 따름. • 시행시기 : 2016.3.1

2. 웹진으로 보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뉴스레터 “NILE 뉴스레터”
 - ▶ 블로그 주소 : http://blog.naver.com/nile_kr

[그림 11]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6년 7월호 NILE 뉴스레터



3. 시·도교육청 방문접수처

〈표 31〉 광역시 이상 시·도교육청 방문접수처

기관	부서	전화번호	주소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과	02)3999-511	서울시 종로구 송월길 48 (신문로 2-77)
부산시교육청	건강생활과	051)8600-425	부산시 부산진구 화지로 12 (양정1동 455-1)
대구시교육청	총무과 민원실	053)231-0575	대구시 수성구 수성로 76길 11 (수성2가 119-2)
인천시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032)420-8275	인천시 남동구 정각로 9 (구월동 1137)
광주시교육청	민원봉사실	062)380-4286	광주시 서구 화운로 93 별관 1층 (화정2동 657-37)
대전시교육청	교육정책과	042)480-7832	대전시 서구 둔산로 89 (둔산2동 1294)
울산시교육청	총무과 고객지원실	052)210-5400	울산시 중구 북부순환도로 375 (유곡동) 1층 고객지원팀
세종시교육청	행정과	044)320-32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54 (보람동 664-15)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평생교육과	031)820-0536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 700 (금오동)
	경기평생교육학습관 평생교육부 평생학습담당	031)259-1041	[경기도평생교육학습관] 경기도 수원시 권중로 55 (권선동1234)
강원도교육청	지식정보과	033)259-0894	강원도 춘천시 영서로 2854 (사농동 84)
충청북도교육청	과학직업교육과	043)290-2223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929 (산남동 4-11)
충청남도교육청	평생교육행정과	041)640-8215	충남 홍성군 홍북면 선화로 22 (신경리 8-1)
전라북도교육청	미래인재과	063)239-3406	전북 전주시 완산구 흥산로 111 (효자동2가 1325)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과	061)260-0878	전남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 (남악리 1457번지)
경상북도교육청	과학직업과	053)603-3425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511 (갈전리 42)
경상남도교육청	교육복지과	055)268-131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41 (용호동 6-1)
제주도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	064)710-039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5 (연동 311-46)

(2016. 7. 현재)

오시는 길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주소

(06734)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7 국가평생교육진흥원 1층 행복학습카페

* 주차가 불가능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이용

3호선, 신분당선 양재역 1번 출구에서 도보 5분



버스 이용

- 500-5번, 500-2번, 1121번, 8241번, 405번, 406번, 17번, 20번, 21번 버스 탑승 후 '서초구청앞' 하차
- 17번, 21번 버스 탑승 후 '외교안보연구원(서초구청)'하차 후 횡단보도 건너편 위치



▣ 만든 사람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독학사관리본부 학사행정실

- 변종임, 신종수, 정구현, 이은지, 양석표, 송은주, 오영창, 박은희

학점은행제 길라잡이

발 행 2016년 7월

발 행 인 기 영 화

발 행 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주 소 (06734)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7

전화: (국번없이)1600-0400 팩스: (02)3780-9855

※ 본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